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고방지법

주체112(2023)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14호로 채택

제 1 장 사고방지법의 기본

제 1 조 (사고방지 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고방지법은 사고방지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 다.

제 2 조 (사고의 정 의와 구분)

이 법에서 사고란 국가의 법과 규정, 제정된 질서를 어겨 뜻밖에 발생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말 한다.

사고는 발생한 부문에 따라 경제부문사고와 기타 사고로 구분하며 피해대상과 규모에 따라 중 대사고와 일반사고로 나눈다.

제 3 조 (사고방지 선행원칙)

국가는 모든 부문과 단위의 사업조직과 집행에서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켜나 가 도록 한다.

제4조 (준법교양선행 원칙)

국가는 모든 기 관, 기 업소, 단체 및 공민들속에 사고방지 의식을 높여주기 위 한 준법 교양을 강 화하여 사고방지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제 5 조 (사고방지사업의 과학화, 현대화)

국가는 현대적인 사고방지시설과 설비, 수단들을 적극 연구도입하고 선진과학 기술을 받아 들 여 사고방지사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 6 조 (사고방지 사업 에 대 한 지도)

사고방지 사업 에 대 한 지도는 내 각의 통일적 지도밑 에 중앙로동행정 지 도기 관을 비 롯한 해 당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가 한다.

제 7 조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과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 국투 자기 업, 외국인에 게도 적 용한다.

제 8 조 (다른 법과의 관계)

사고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해 난사고 처리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사고방지기구와 사고방지사업

제 1 절 사고방지대책위원회

제 9 조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조직)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국가의 사고방지정책을 집행하는 비상설 기 관이다.

로동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내각에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도 (직할시) , 시 (구역) , 군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고방지대책위 원회를 내오고 운영한다.

상급단위 사고방지대 책위원회는 산하단위 사고방지대 책 위원회 사업을 지도 통제 하며 산하 단위 사고방지 대 책위원회는 상급단위 사고방지대 책위원회 에 사업정 형을 정상적으로 보고 한다.

제 10 조 (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다음의 성원들로 구성한다.

1. 중앙사고방지 대책위원회는 내각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 검찰 기 관, 중앙사회 안전지도기관, 국가검 열 기관, 중앙로동행정 지도기관, 중앙품질감독지도기 관, 중앙 철도운수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을 위 원으 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단위의 행정 책임일 군을 위원장으로, 필요한 일군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도 (직할시) , 시 (구역) , 군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장을 위원장 으로,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 농업지도기관, 근로단체를 비롯한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들을 위 원으로 구성한다.

제 11조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리도록 한다.
2. 로동재해, 설비사고, 교통사고, 화재사고, 폭발사고, 가스중독사고, 물에 빠지는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3. 로동재해를 비롯하여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원과 설비, 자금, 기자재를 동원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반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사고방지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매 분기마다 사고방지와 관련한 분공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총화한다.
6. 사고방지대책 월간사업과 사고방지대책의 날운영을 조직지도한다.

제 12조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권한)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방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에게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할수 있다.
2. 사고방지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과 공민을 표창할데 대한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3. 사고방지를 위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킨자를 행위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해당 법 기관에 자료를 넘겨 처벌할수 있다.
4.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법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 공민에게 상금과 표창 또는 여러가지 대중운동판정에서 고려할것을 결정할수 있다.

제 13조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1차 운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한 때,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방지대책월간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임의의 시기에도 운영할수 있다.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은 위원들이 참가하여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의내용에 따

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당 일군들을 방청으로 참가시켜 진행할수 있다.

사고방지대책위원회운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제 14조 (사고방지대책위원회운영을 위한 상무사업)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보장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하며 그밖의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실무사업은 해당 기관의 행정종합부서 또는 참모부서가 한다.

제 2 절 사고방지사업

제 15조 (사고방지를 위한 로동안전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조직에 앞서 각종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제 16조 (설비관리질서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관리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설비의 점검과 정비보수를 제때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 17조 (로동안전환경개선)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18조 (로동안전규률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지령을 선행하고 설비의 표준조작법, 안전조작법의 준수와 로동안전상태의 확인 등 로동안전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19조 (사고위험개소퇴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 불비한 요소를 빠짐 없이 장악하고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공민은 사고위험개소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퇴치하거나 사회안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 20조 (사고를 막기 위한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경제기술적, 물질적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 21조 (사고방지사업의 정보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정보화하고 현대적인 사고방지시설과 설비, 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제22조 (리, 읍, 로동자구, 동의 사고방지사업)

리 (읍, 로동자구, 동) 의 사고방지 사업은 해 당 시, 군인민위 원회 의 지도밑 에 사무소가 맡아 진행한다.

사무소는 인민반에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며 가스중독사고, 화재 사고, 물에 빠지는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경비순찰을 조직하며 위험개소들에 위험표식, 안전울타리설치와 같은 필요한 사고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23조 (사고방지를 위한 대렬강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원, 검직소방일군, 군중자위소방대원 등 사고방지를 위한 전문일군, 검직일군대렬을 책임성이 높은 대상으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조 (사고위험물질취급성원선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 폭발물, 독성물질, 압설비와 같이 사고위험성이 높은 물질 이나 설비를 다루는 성원을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책임성이 높은 대상으로 선발 하며 보관, 취급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조 (사고방지 대책 월간운영)

5월과 11월은 사고방지 대책 월간 이 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방지대책월간에 일군들과 종업원, 주민들속에 각종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며 사고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26조 (사고방지 대책의 날 운영)

사고방지 대책의 날은 매 달 마지막주 목요일 이 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방지대책의 날운영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사고를 막을데 대한 국가의 결정, 지시를 해설침투하여야 한다.
2. 계절별, 시기별로 제기되는 각종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조직 진행하여 야 한다.
3. 월 간 사고방지 사업 에 서 제 기 된 문제 를 통보하고 총화대책 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고통보체계수립과 구조

제 27 조 (사고통보체 계의 수립)

내각은 전국적범위에서 지역별, 부문별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통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제때에 장악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사고발생날자와 시간, 장소, 사고명, 피해정형 같은것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조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사고통보)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해당 지역과 단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제때에 장악 하기 위 한 정연한 통보체 계를 세우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한 대 책을 세워 야 한다.

제 29조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사고통보)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자기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제때에 장악하기 위한 정연한 통 보체계를 세우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내각과 중앙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 30 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사고통보)

각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제때에 장악하기 위한 정연한 통보 체계를 세우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급기관과 지역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조 (기관, 기 업소, 단체 의 사고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급기관과 지 역 사회안전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공민의 사고통보)

공민은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단위책임일군과 지역 사회안전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3조 (구조지휘부의 조직)

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피해규모가 큰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인민위원 장을 책임자로 하고 사회안전기관, 보건기관을 비롯한 필요한 성원들을 망라한 구조지휘부를조직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지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구조전투와 관련한 구조지휘부의 지 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34조 (구조전투의 조직지휘)

구조전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조직지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거나 정치적손실을 가져올수 있는 피해를 즉시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전투를 선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급소생과 회복치료 전 투를 신속히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구조전투에 필요한 모든 인원과 기재, 설비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5. 사고발생지역 안의 교통, 설비, 시설의 안전과 연료, 가스, 전력, 물공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구조상황과 실태를 제때에 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고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 35조 (사고방지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사고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부문별 감독통제기관과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 농업특수감찰기관이 한다.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 농업특수감찰기관은 해당 단위에서 모든 사고위험요소를 제때에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36조 (부문별감독통제 기관의 감독조사)

해당 부문별 감독통제기관은 자기 부문의 사고방지 사업을 감독하고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다.

제 37조 (검찰기관의 사고조사)

검찰기관은 품질사고, 환경오염, 오작설계 및 시공에 의한 사고, 수매받은 량곡의 부패변질사고와 같은 경제부문에서 발생한 사고와 의료활동과정에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며 부문별 감독통제기관들의 사고방지감독정형에 대한 준법성 감시를 진행한다.

제 38조 (사회 안전기관의 사고조사)

사회 안전기관은 도로교통사고, 철도교통사고, 화재 사고, 폭발물사고, 화약류사고, 압설 비 사고, 독성물질사고, 방사성물질사고와 같은 사회안전을 침해한 각종 사고를 조사한다.

제 39 조 (국가검열기관의 사고조사)

국가검열기관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경제부문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를 조사하며 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사고통보정 형과 사고심의정 형을 감독통제한다.

제 40 조 (농업특수감찰기관의 사고조사)

농업특수감찰기관은 종자의 보관과 파종, 비료와 농약의 시비와 같은 영농작업 과정에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다.

제 41 조 (사고심의제 기)

해당 부문별감독통제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재해와 관련한 조사자료를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고심의제기문건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자, 시간, 장소, 형태, 동기와 원인, 사고를 발생시킨 단위의 사고방지실태, 사고로 인한 인적 및 재산적손실, 후과, 책임관계 같은것을 밝힌다.

제 42 조 (사고심 의관할)

사고심 의는 사고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중앙사고방지 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도 (직할시), 시 (구역), 군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기관, 기업소, 단체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하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 관할에 속하는 대상을 직접 심의할수 있다.

해당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관할은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제 43 조 (사고심 의 내 용)

사고심의에서 토의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고가 발생한 날자, 시간, 장소, 형태
2. 사고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원인
3. 사고를 발생시킨 단위의 사고방지사업실태
4. 사고로 인한 인적 및 재산적손실

5. 책임관계와 처리문제
6.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문제
7.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8. 그밖에 제기되는 문제

제 44 조 (사고심의정형통지)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사고심의가 끝나면 해당한 결정을 하고 그 정형을 관계 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 45 조 사고심의결정에 대한 집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 그 집행정형을 알려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6 조 (중지처벌)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지처벌을 적용한다.

1. 중대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 위험개소가 나타났을 경우
2. 위험개소를 퇴치할데 대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3. 노동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47 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는 1 000~ 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사고방지계획에 따르는 안전교양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았거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사고방지대책월간, 사고방지대책의 날운영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4. 사고발생에 대한 통보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5. 전문지식이 없는자에게 사고위험물질을 다루게 하였을 경우
6. 구조의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 48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과 준법교양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사업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3. 노동재해, 설비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4. 사고를 막기 위한 사고방지대책위원회 분공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사고방지대책월간, 사고방지대책의 날운영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6. 구조상황과 실태를 제때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49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이 법 제47조, 제48조의 행위를 3번이상 하였을 경우
2. 로동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4. 설비의 점검과 정비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5. 로동안전규율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6. 사고위험개소와 요소를 제때에 통보하지 않았거나 통보를 받고도 퇴치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7. 발생한 사고를 약화시켜 보고하였거나 과장하여 보고하였을 경우
8. 구조지휘부의 지휘에 복종하지 않아 전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2만원분 이상의 재산이 손실되게 하였거나 발생한 사고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 50조 (강직, 해임, 철직 처벌)

사고방지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강직, 해임, 철 직처
별을 준다.

제 51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책
임을 지운다.

제 52조 (시행 일)

이 법은 주체113 (2024)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